

『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정석의원 외 5인

2. 제안이유

- 저소득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교육기회 균등 제공
- 근로자 복지 향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관내 근로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(안 제1조)
-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 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(안 제3조)
-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부시장과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이 공동으로 한다(안 제4조)

4. 참고 사항

가. 조항별 분석

조	문	문제점 및 방안
제1조(목적)	이 조례는 구미시 <u>관내 근로자 자녀</u> 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○ <u>관내 근로자 자녀</u>를 <u>관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</u>로 수정 적용함이 개념상 명확할 것으로 사료됨
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	①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<u>고등·대학생</u> ②기업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근로자의 자녀인 <u>고등·대학생</u> ③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	○ 제1조(목적)를 수정할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○ 지급 대상의 <u>고등·대학생</u>을 <u>고등 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</u>으로 수정함이 어법상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
제3조(장학생 수와 지급액)	①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수와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	○ 위원회는 심의 기관이므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<u>시장</u>이 정한다 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제4조(장학생선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	①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선발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위원장은 부시장과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이 공동으로 한다. ④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 한다	○ ③항의 부시장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할 경우 회의 주재 및 업무 처리 등에서 혼선이 초래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사회 통념상 위원장을 1인으로 함이 원만한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○ 또한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명시할 경우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단체에서의 반발이 예상됨. ○ 따라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, 부위원장은 노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함이 운영면에서 상호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○ 위원회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⑤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동복지과 노사협력담당으로 한다

조	문	문제점 및 방안
제9조(장학생의 관리)	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.	○ 장학생의 관리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있을 경우 원만한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- 따라서 「시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학생이」라는 자구를 삽입하여야 할 것임

나. 근로자 자녀 장학금 운용 실태 : 전국 4곳(장학금1, 기금3)

시 도 명	시 군 명	조	레	명	재	원	비	고
경상북도		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	기	금				
경상남도		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	기	금				
	창 원 시	창원시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	일반회계				1995년	제정
	군 포 시	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	기	금				

다. 장학금 지원 현황

(단위 : 인원, 천원)

시 군 명	구 분	2004년도		2005년도		비 고
		인 원	금 액	인 원	금 액	
창 원 시	소 계	50	30,000	50	30,000	장학금
	중 학 생					
	고 등 학 생	50	30,000	50	30,000	
	대 학 생					
군 포 시	소 계	5	10,000	10	17,750	기 금
	중 학 생					
	고 등 학 생					
	대 학 생	5	10,000	10	17,750	

라.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시군별 집행 실적(2004년도)

(단위 : 인원, 천원)

시 군 명	계	고 등 학 생		대 학 생		비 고
		인 원	금 액	인 원	금 액	
계	64	30	26,952	34	64,000	
포 항 시	8	5	4,809	3	6,000	
경 주 시	7	4	4,054	3	6,000	
김 천 시	1			1	2,000	
안 동 시	6	5	4,386	1	2,000	
구 미 시	6	2	1,489	4	8,000	
상 주 시	3	2	2,023	1	2,000	
문 경 시	3	3	1,106			
경 산 시	3	1	1,094	2	3,000	
군 위 군	2	1	953	1	2,000	
영 덕 군	1			1	2,000	
고 령 군	3	2	2,136	1	2,000	
성 주 군	1			1	2,000	
칠 곡 군	7	2	2,129	5	9,000	
봉 화 군	1			1	2,000	
울 진 군	2			2	3,000	
한국노총	10	3	2,773	7	13,000	

마.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시군별 집행 실적(2005년도)

(단위 : 인원, 천원)

시 군 명	계	고 등 학 생		대 학 생		비 고
		인 원	금 액	인 원	금 액	
계	89	31	31,735	58	110,000	
포 항 시	6	4	4,506	2	3,000	
경 주 시						
김 천 시	1			1	2,000	
안 동 시	6	4	4,510	2	4,000	
구 미 시	15	4	3,589	11	20,000	
영 주 시	2	1	1,134	1	2,000	
문 경 시	2	1	1,145	1	2,000	
경 산 시	10	3	3,260	7	13,000	
군 위 군	1	1	1,057			
영 덕 군	3	1	1,065	2	4,000	
성 주 군	1			1	2,000	
칠 곡 군	3	1	1,073	2	3,000	
봉 화 군	1			1	2,000	
울 진 군	1			1	2,000	
한국노총	37	11	10,396	26	51,000	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근로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제정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
- 안제1조(목적), 안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, 안제3조(장학생 수와 지급액), 안제4조(장학생선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, 안제9조(장학생의 관리)에서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을 「조항별 분석서」에서 검토 하였으므로 의정 활동에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전국 검색 결과 4개 자치단체에서 상기 「참고사항」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금 및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학금 지급 조례(통리장, 새마을지도자, 저소득 자녀)등은 일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또는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,
- 이번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제정함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장학금 지급 조례가 사장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조성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

- 안제4조③항의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이라 명시한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단체에서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 의견에서도 “장학금 지급에 관해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·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초 조례 제정 목적에 위배된다” 라는 회시도 있으므로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고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화를 투입함으로 인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바,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근로자의 고등·대학생 자녀를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은,
- 일반 주민은 물론 다른 농민단체 등 근로자가 아닌 단체의 자녀 및 고등대학생을 두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, 향후 각 단체의 요구에 대한 장학금 조례가 남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미시 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 입법은 진실과 현실적인 것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실제적인 효용성이 있어야 함을 고려하여 더욱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요구됨.